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검토경과

- 발의일자 : 2023년 9월 27일
- 발 의 자 : 허시영 · 권기훈 · 김원규 · 김지만 · 류종우 · 운영애 · 이동욱 · 이성오 · 이영애 · 이재숙 · 이태손 · 전경원 · 전태선 · 하중환 · 황순자 의원
- 회부일자 : 2023년 10월 4일

2. 제안이유

- 정당현수막에 대한 설치기준 등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시민의 통행 안전 및 도시미관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표시하는 현수막의 게시 방법

및 게시 가능한 현수막 개수, 내용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함
(안 제12조의3 신설)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표시하는 현수막(이하 “정당현수막”이라 함)을 표시·설치함에 있어 표시장소와 표시가능 현수막 개수, 내용 등 표시방법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정당현수막의 난립을 방지하여 시민의 보행안전을 확보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려는 것임.
- 이번 개정안은 안 제12조의3을 신설하는 것으로, 정당현수막을 지정계시대에 표시하도록 하고, 정당별 동시에 표시할 수 있는 정당현수막의 개수를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4개 이하로 제한하였으며, 혐오·비방의 내용을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개정²⁾으로 정당현수막이 허가·신고(법 제3조)와 금지·제한(법 제4조)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됨에 따라 정당현수막 설치가 급증하였고 이로 인해 통행안전 위협과 도시미관 저해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였음.
-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러한 정당현수막의 난립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지난 5월부터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2) 2022.6.10. 개정 / 2022.12.11. 시행

재정비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법적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

※ 가이드라인 재정비 전후 비교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 유형 | 내 용 | 재정비 전 | 재정비 후 |
|----------|-----------------------------------|-------|---------------------------------|
| 설치 주체 | ① 일반 당원과 공동 명의로 표시 | 인정 ○ | 인정 × |
| | ② 시민단체, 조합 등 단체 명칭을 함께 표시 | 인정 ○ | 인정 × |
| | ③ 특정 단체의 후원 사실을 명기 | 인정 ○ | 인정 × |
| 표시 방법 | ④ 천을 덧대거나 수기로 표시기간 임의 연장 | - | <신설> 인정 × |
| 처리 절차 | ⑤ 설치장소 위반(안전사고 우려 장소) 현수막 처리방법 | - | <신설> 정당에 시정요구, 미이행 시 강제처분 |
| | ⑥ 지자체 직접 철거시 필요 조치 사항 | - | <신설> 증거 사진 등 확보 후 철거 |
| 설치 장소 | ⑦ 정치현수막 우선 게시대, 지정게시대 설치 권고 | - | <신설> 지정게시대 설치 지원 예정 |

- 인천광역시는 전국 최초로 정당현수막을 지정게시대에 게시 하도록 하고, 동시 게시가능 개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공포(2023.6.8.)하였고, 행정안전부는 인천시의 조례 내용이 상위법에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2023.6.15.)을 하였으나,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 결정(2023.9.14.)되었음.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검토보고서³⁾를 보면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정당현수막의 게시장소, 개수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출하였고, 지난 7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17개 시도지사는 공동결의문을 통해 옥외광고물법의 정당현수막 관련 조항 폐지를 정치권에 요구하였으며, 인천시 외에도 울산시, 광주시, 부산시, 서울시 등이 정당현수막 제한과 관련하여 조례 개정을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음.
-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당현수막의 표시방법에 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정당현수막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여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려는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보여짐.
- 다만 정당현수막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는 조례가 지방자치법상 법률유보의 원칙⁴⁾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행정안전부 대법원

3) 제406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참고자료, 2023. 5. 18.

4)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소가 아직 진행 중이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각 구·군에서는 지정게시대에 표시할 현수막이 표시가능 수량을 초과할 경우 추첨⁵⁾을 통해 표시대상을 선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 개정 후 정당현수막의 지정게시대 이용에 대비하여 지정게시대 운영기준 보완과 추가설치 등의 후속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본 조례 제12조(현수막의 표시방법)

- ③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 및 그 지정게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 1~ 6 생략
 - 7.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의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시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구청장 또는 군수는 선정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참 고

개정안 관련 자치단체 의견

(출처: 제406회 국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검토보고)

| 지자체 | 위임 범위 | 위임 방식 |
|-------|--|--|
| 서울특별시 | ▶ 장소, 개수 제한 필요 | - |
| 노원구 | ▶ 장소, 개수, 규격 등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제한 필요 ▶ 설치 이전 표시사항 및 게시장소, 수량, 규격을 서면 제출 | ▶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지역 내 정치적 관여 가능성 제한 필요 |
| 부산광역시 | ▶ 장소, 개수, 규격 제한 필요, 교차로·횡단보도 주변 설치 금지 필요 | ▶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지역 간 표시방법 차이로 인한 정당과의 마찰 우려 해소 필요 |
| 부산진구 | ▶ 규격, 개수, 장소 제한 필요 | ▶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지자체 형평성 제고, 눈치보기식 제한 우려 해소 필요 |
| 해운대구 | ▶ 장소, 개수, 설치방법(설치 높이, 글자 크기) 제한 필요 | - |
| 대구광역시 | ▶ 장소, 개수, 규격, 이격거리 제한 필요 | - |
| 대구 북구 | ▶ 정당현수막 적용배제 조항 폐지 필요 - 정당활동에 관한 특례가 지나치게 넓고 필요성 및 긴급성이 빈약하므로 형평성을 고려할 때, 삭제 필요 | |
| 인천광역시 | ▶ 정당현수막 적용배제 조항 폐지 필요 - 현수막 난립으로 인한 안전사고, 민원 증가, 일반 현수막과의 형평성, 환경 오염 등을 고려하여 폐지가 바람직함 | |
| 연수구 | ▶ 장소(지정게시대), 개수, 규격 제한 필요 ▶ 기상특보 발효시 철거 조항 필요 | - |
| 대전광역시 | ▶ 장소, 개수, 규격, 이격거리 제한 필요 | ▶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일괄적인 가이드 라인 필요 - 정당현수막은 전국에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조례로 정하면 차별논란 등 문제 발생 우려 |

| 지자체 | 위임 범위 | 위임 방식 |
|----------|---------------------------------|--|
| 울산광역시 | ▶ 장소, 개수 제한 필요, 일부 세부사항은 조례로 위임 | ▶ <u>대통령령</u>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위임하는 발의안에 동의 - 현수막의 표시방법, 기간, 장소, 개수를 제한하고 세부적인 규제사항을 조례로 위임하여 실질적인 정치현수막 제재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 |
| 경기도 수원시 | ▶ 장소, 개수, 규격, 이격거리 제한 필요 | ▶ <u>대통령령</u> 으로 정하여 시급하게 해결 필요 - 제한지역 발굴, 인근지자체와 조례와 비교분석 등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 |
| 경기도 김포시 | ▶ 장소, 개수, 규격 등 제한 필요 | ▶ <u>대통령령</u> 으로 정하여 전국 동일하게 제한 필요 |
| 경기도 군포시 | ▶ 장소, 개수 제한 필요 | ▶ <u>대통령령</u> 으로 정하여 일관성 확보 필요 |
| 경기도 여주시 | ▶ 장소, 개수 제한 필요 | ▶ <u>대통령령</u> 으로 정하여 현장 혼선을 줄이고 시급하게 해결 필요 |
| 경상남도 창원시 | ▶ 장소, 개수, 규격, 이격거리 제한 필요 | ▶ 시·군·구 동일성을 위해 <u>대통령령</u> 으로 정할 필요 |
| 경상남도 거창군 | ▶ 장소, 개수, 규격 제한 필요 | ▶ <u>대통령령</u> 으로 정하여 시군구 동일 지침 적용 필요 |
| 경상남도 합천군 | ▶ 장소, 개수, 규격 제한 필요 | ▶ <u>대통령령</u> 으로 정함이 타당 |
| 강원도 원주시 | ▶ 설치방법 및 제한으로 폭넓게 규정 필요 | ▶ 전국적 통일성을 위해 <u>대통령령</u> 으로 정함이 타당 |